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발송 No. 2020. 07. 23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영업부서장
제 목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공익사업 참여 요청(2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최근 2년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방치폐기물과 코로나 19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공익 기능을 확대하고자 정관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을 명문화"**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성군 쓰레기산"도 조속히 처리하고자 모든 조합원이 적극 참여하여 고통분담을 하였으나 방치된 양이 워낙 방대하여 아직까지도 환경부가 동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대위에서는 **소각·매립업의 기반시설 역할 확대와 공익 증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통분담을 추진**코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어려우시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 동참으로 생각하시어 붙임 양식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20.7.29(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성군 쓰레기산 상황

(단위 : 톤, '20.6.30 기준)

기 처리량		잔여량	총량
소각	7,500	95,000	200,000
재활용(시멘트소성로)	40,000		
불연물(임시보관)	57,500		
계	105,000	95,000	200,000

※ 당초 정부가 집계한 17.3만톤 보다 방치폐기물이 약 3만톤 증가

나. 폐기물 처리 일정

구분	기간	성상	처리단가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 '20.12.31	- 불연물 선별 폐기물 **※ 마대, 폐그물류 등 전처리 필요 폐기물**	190,000

※ 물가상승률 반영 예정으로 비용 소폭 상승할 수 있음

※ 상차, 수집·운반, 부가세 포함

다. 처리조건

○ 재활용방치폐기물 사업장 내 임시보관 가능

○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기간 동안 허가받은 처리량 대비 10%까지 폐토사·불연물 사전 선별 후 매립장 재위탁 가능

- 임시보관 및 폐토사·불연물 사전 선별 기간은 '20.12.31까지 적용(향후 6개월 연장 검토)

※ 매립부담금 : '20.6.30일까지 매립한 소각잔재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은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을 통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었으나, 이후 발생된 매립부담금은 면제 불가능

라. 개정 정관 주요내용

[조합, 협회사업] ① ~ ② (생략)

③ 조합(협회)은 조합원(회원사)이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공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처리가 시급한 방치폐기물 및 재해·재난폐기물 발생 시 우선 처리 사업
2. 기타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한 현장 진단 및 자문사업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제2판)은 조합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中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사진 1부.
2.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中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고통분담 참여 신청서 1부.
3.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제2판)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담당 장대규 대외협력팀장 오은석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20 - 306호 (2020. 7. 23)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붙 임 1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中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성상 사진

가. 의성 쓰레기산 현장 상황

□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 중장비를 이용하여 폐토사·불연물 약식 선별 후 원물과 분리하여 야적 보관 중인 폐기물

나. 공익사업 대상폐기물[1차 선별한 폐기물(파쇄 X)]

붙 임 2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中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고통분담 참여 신청서

가. 공익사업 대상폐기물

처리기간	참여여부	처리가능량(톤)
~ '20.12.31까지		

※ '20.12.31 이후, 임시보관 및 폐토사·불연물 사전선별 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 검토 예정('21.6.30)

나. 기타 의견

의 견	사 유

2020. 7 . .

업 체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귀중

붙 임 3

불법폐기물 안정적 · 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제2판)

2020. 7.

환 경 부
(폐자원관리과)

1 추진배경

□ '19.2월기준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방치·불법투기 등) **약 120만 톤이 적체**되어 2차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국민 생활 및 안전에 우려

○ 당초 처리계획(2.21 대책)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대통령지시사항, 4.29)

⇨ 이에, **사회적재난 상황***인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법령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 화재발생,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국민안전우려 및 국제적인 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 위신 하락 우려

2 추진경과 및 관계법령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9.2.21)

☞ 불법폐기물은 신속하고 안정적 처리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법령상 **적극행정 이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폐기물 보관량·기간 초과 승인) 및 제32조 〔별표8〕 제3호(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3 기본 방향

① **불법폐기물은** 신속히 **"폐기물중간(소각) 처분업체로 반입"**

②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반입량 증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업장내 여유 부지**를 활용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등 설치·운영**

*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보관을 위한 **"폐기물 임시 보관장"** 승인

③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소각처분하기 위한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불연물은 매립업체로 재위탁 가능**

☞ 불연물 재위탁량은 **허가받은 소각처분용량의 10% 이내**

* 지자체는 소각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 중 분리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사 등 매립대상 **"불연물에 한해 재위탁"** 승인

4 불법폐기물 배출·처분 방안

1.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승인

⇨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체"**가 **불법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동 사업장 내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보관기간 연장 승인**

【해당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

□ **(대상업체) 불법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는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체**

○ 다만,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도 가능

□ **(임시 보관장)** 불법폐기물 소각처분을 위해 반입한 경우 **"임시 보관장" 및 "보관기간" 연장 승인**

□ **(설치지역)** "폐기물중간처분업체" **사업장 내 여유부지**

□ **(허용 보관량)** 폐기물 최대 소각 처분량을 감안하여 **보관과정에서 붕괴, 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

□ **(승인기간) 2020. 12. 31일**

○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 및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 검토**

임시 보관장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 **임시 보관장 주변은** 외부인 출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간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됨

◇ **임시 보관장소 바닥은** 침출수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천막 등을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됨

- **임시 보관장 발생 침출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유입·처리**

◇ 임시 보관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인화성물질 보관·저장장소와 안전거리 확보된 장소

☞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은「폐기물관리법」제4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

2.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불연물 재위탁 가능

⇨ **"폐기물소각처분업체"**는 **불법폐기물 분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등 매립대상 **불연물은 매립 업체로 재위탁** 가능

【해당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8〕 제3호

□ **(대상업체) 불법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는 **폐기물중간**(소각)**처분업체**

□ **(승인대상)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에서 **소각처분을 위해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립대상 **불연물에 한함**

*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발생되는 매립대상 불연물

□ **(재위탁 승인량)** 소각업체가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0% 범위 내**

□ **(승인기간) 2020. 12. 31일**

○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 및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 검토**

불연물 재위탁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 **불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매립업체**로 **재위탁하고**, 그 양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됨

- 동 지침 종료 후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통해 **불연물 재위탁 신고 내용 제외**하여야 됨

◇ **지정폐기물에 오염된 폐기물**은 불연물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

5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는 관내 불법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불연물 재위탁 승인 협조**

○ 폐기물소각처분 업체에서 불법 폐기물 처분을 위한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불연물 재위탁 승인 신청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에서 제3의 장소로 운반, 보관**하거나,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임시 보관장"** 승인조건 부여 및 지도·점검 실시

□ 폐기물소각처분 업체는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한 **임시 보관장 설치** 등으로 인해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폐기물 **임시 보관장 설치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불법폐기물 보관과정에서 침출수 유·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

□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위(수)탁 계약 물량이 '20년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참고 관련 서식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설치(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 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소각시설) 소재지	
⑨ 임시 보관장 소재지	

⑩ 임시 보관량 설치 승인 신청내용

⑪ 임시 보관장 규모		⑫ 불법폐기물 반입 계획량	
(톤)		(톤)	
⑬ 임시 보관장 설치 형태	바닥 재질	울타리 구조	
⑭ 불법 폐기물 임시 보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임시 보관장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불연물 재위탁(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업 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소각시설) 소재지			소각시설 허가용량	톤/일
⑨ 불법 폐기물 반입현황	반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반입량	톤		
⑩ 불연물 재위탁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위탁 폐기물	재위탁 예상량 (톤)	수 탁 업 체		
		업 체 명	영업대상 폐기물	소재지
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불연물 재위탁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